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6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2.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18. 체결된 매매 예약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E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0. 24. 접수 제105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0. 24.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은 E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7. 19. 접수 제7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8.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C과 E 사이에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 D과 전득자인 피고 C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8. 체결된 매매계약과

전득자들인 피고 C과 E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또는 전득자들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 C과 E 사이에 2022.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지